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84,941,171	17,548,235
일반회계	550,782,633	16,523,479
특별회계	34,158,538	1,024,756
기타특별회계	34,158,538	1,024,756
상수도사업	2,764,902	82,947
하수도사업	3,320,701	99,621
수질개선	10,866,555	325,997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200	16,986
의료급여기금	730,522	21,916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812,420	24,373
공영개발사업	836,520	25,09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11,072	3,332
행복주택사업	5,137,646	154,129
청사건립사업	3,012,000	90,3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956,59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재해대책 및 복구비